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가단5000130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5. 11. 4.

판결 선고2015. 12.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56,449,665원과 그 중 55,451,458원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4. 7.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경매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E 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5. 11. 4. 작성된 배당표에 기하여 갖는 잔여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라.
다. 피고 C은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경매계)에 위 나.항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판사김진환

별지